[이해상충 방지 방안]

▪ 하나은행(신탁)은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함에 있어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의사결정 체계 및 이행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.

- 신탁재산 운용 및 리스크관리 담당 임직원으로 구성된 "신탁자산 투자위원회 (이하 투자위원회)"로 하여금 수탁자 책임 정책 수립 및 실제 이행 과정에서의 주요 의결사항 등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수탁자 책임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유지합니다.
- 신탁부문 내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는 부서와 임직원을 지정하고 고유부문 및 신탁부문 내 다른 부서와 분리함으로써 업무 처리 및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.
-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는 부서와 고유 부문 및 신탁부문 내 다른 부서 간 투자운용과 관련한 정보교류는 엄격히 제한됩니다.
-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공개한 「K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」을 참고하여 찬성·반대 등 주요 사항을 결정함으로써 의결권 행사의 독립성을 확보합니다.

▪ 하나은행(신탁)은 충분한 독립성을 갖춘 신탁 Compliance Officer 로 하여금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상시 점검하도록 합니다.

- 신탁 Compliance Officer 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수탁자 책임과 관련한 이해상충 문제를 상시 점검하며, 점검 결과를 주기적으로 투자위원회에 보고합니다.
- 신탁 Compliance Officer 는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시정 조치 요구 및 부서장 보고를 통해 즉각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.
- 신탁 Compliance Officer 는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는 임직원의 자문 요청에 성실히 응함으로써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최소화합니다.

▪ 하나은행(신탁)은 수탁자 책임과 관련한 이해상충 방지 방안을 별도로 공개함으로써 수탁자 책임 이행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제고합니다.

▪ 본 방안의 개정은 투자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따릅니다.